

# 변호인의견서

사 건 2015고합329 명예훼손

피 고 인 박유하

2016. 8.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배진혁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다) 귀중

# 변호인의견서

사 건 2015고합329 명예훼손

피 고 인 박유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검찰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5번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증거로 제시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하에서 위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이 ① 피고인 개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② 설령 위 내용이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는 성노예였으며, 일본군의 강제연행이 있었으며, 일본국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범죄일람표 1번 - 이 사건 도서 제19쪽

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과 일본군에 애국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이하 '이 사건 도서' 라고 하겠습니다)를 저술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

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그러나 범죄일람표 1번의 기재내용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으며, 센다 가코라는 일본 저널리스트가 1973년 출간한 『목소리 없는 여성 8만명의 고발, 종군위안부』란 도서에서 ‘위안부란 군인의 전쟁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 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센다 가코는 위 도서에서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 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은 센다 가코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안부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을 문제삼았다는 점이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낸 것이 라고 평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726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 이라 하겠습니다)도 범죄일람표 1번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 이

사건 도서의 첫 부분으로, 제일 먼저 센다 가코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소개하면서 센다 가코의 분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후, 이 책을 주로 인용하면서 업자들이 관여하였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 박유하의 센다 가코의 분석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

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1번의 기재내용은 센다가 위안부를 이해한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에 불과하며,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  
서에서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가 거짓애국을 선택’ 하였다거나, 당시 조  
선인 위안부가 ‘식민지하에 피해자’ 라고 서술하는 등 위안부를 식민지하  
에서 거짓애국을 한 피해자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범죄일람표 1번의 센다의 의견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가 ‘위안부가 일본국  
에 애국적 협력자이었다’ 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62쪽

물론 ‘조선인 일본군’이 그랬듯이, ‘애국’의 대상이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위안  
부’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  
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90쪽

‘조선인 위안부’들은 분명 피해자였지만, 그러면서도 ‘일본 제국’ 안에서 ‘두 번째 일본  
인’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식민지인의 모순이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

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60쪽

그러나 포주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위안부들이(물론 그중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돌아간 이들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혹감과 슬픔과 분노를 지우고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적극성은 포기와 체념, 혹은 그저 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트릭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교를 부리는' 일이 비참성과 배치되는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이 '위안부의 고통'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57쪽

설사 그녀들의 수치심을 상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었던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던 '위안부'들의 고통 자체에 대한 상상은 가능할 것이다(157)

⑧ 이 사건 도서 제204쪽

소녀상은 분명 성노동을 강요당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텐데, 성적 이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다.

⑨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센다 가코의 의견에 대하여 “그 어떤 책 보다는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였다” 라고 평가한 피고인의 의견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취지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 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번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은 가공의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표현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도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2. 범죄일람표 2번 - 이 사건 도서 제32쪽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

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가라유키상의 후예가 바로 위안부의 본질이라고 서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안부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동원된 것인지, 동원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위로 위안부가 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활발한 해외진출을 하면서 해외 진출한 남성들(군대도 포함)을 현지에 묶어 두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성적 위무를 하게 된 ‘가라유키상’ 과 동원된 목적과 경위가 맥을 같이 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자발적 매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외로 송출되었던 여자들인 가라유키상은 매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하여 해외로 송출된 여자들만이 아니었으며, 가난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업주나 포주 등에 의하여 유괴 또는 감언이설에 속거나 부모의 뜻에 따라 팔려져서 강제적으로 해외로 송출되어 매춘 등에 종사하였던 여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서에서 가라유키상에 대하여 자발적 매춘부라는 의미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라유키상이란 “확대된 국가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흐름의 욕망에 동원” 된 (이 사건 도서 제29쪽 5~6줄), “속아 팔려온 소녀들이나 살 길이 막막했던 가난한 여성들”로서, “그들의 ‘이동’ 을 조장하고 묵인한 건 국가권력과 민간업자들이었다” (이 사건 도서 제30쪽 14~16줄)고 서술하여, 가라유키상 역시 유괴되거나, 속아 팔려온 여성들로서 국가에 의하여 동원되어 해외로 송출된 여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23쪽

“제1호 위안부는 군이 모집은 했지만 그 모집에 군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물론 그는 “그렇다고 군이 (위안부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다”(25쪽)라는 중요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도서 제42쪽

위안부’들의 증언은 자신을 데려간 주체가 ‘마을남자’이거나 모르는 아저씨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나 ‘군인’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54쪽

군이 주체가 되는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군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야 한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

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⑦ 이 사건 도서 제29쪽

유괴범들에게 이끌려 어린 소녀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일본이 묵인했던 것은, 조선이나 중국으로 단신으로 건너가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일본 남성들의 향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이 향수에 젖거나 일상의 불편함을 겪어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 확대된 국가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흐름이었고, 그런 욕망에 동원된 것이 '가라유키상'이었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43쪽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

⑨ 이 사건 도서 제143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중략)...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율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의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⑩ 이 사건 도서 제191쪽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빚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⑪ 이 사건 도서 제148쪽 - 다무라 다지로 소설 「메뚜기」 속 장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다시 말해 소설 속의 장면은 '공적'으로 용인된 구도, 즉 종주국—식민지라는 권력구조가 만든 일이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강간으로 처벌받아야 할 영역조차 넘어선 교묘한 구조 속의 일이지만, 문제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그렇게 군대에 의해서든 민간에 의해서든 '공적'인 운영 공간의 바깥에서도 강간—착취당하기 쉬운 존재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와 같이 서술하여,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견적으로 자발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강제연행(구조적 강제 포함)된 후 해외로 강제적으로 송출되어 일본군의 침략지 등에서 성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문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위안부의 본질은 가라유키상의 후예라는 피고인의 의견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취지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 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번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은 가공의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표현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도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3. 범죄일람표 3번 - 이 사건 도서 제33쪽**

<u>‘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u>
--

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위 서술은 앞의 범죄일람표 2번의 가라유키상에 대한 서술에 이어지는 서술로서, 일본인 창기는 앞의 ‘가라유키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라유키상이란 유괴되거나, 속아 팔려온 여성들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해외로 송출된 여성으로서 그중에는 ‘매춘을 강요당한 이들’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말하는 일본인 창기는 가라유키상 중 매춘을 강요당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서술한 것은, ‘매춘’이란 ‘그 자체로 강제노동과 학대와 그에 따른 병과 죽음이 따르는 생활’이었으며, 그러한 “고통”을 이룬바 가라유키상들도 겪었고,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가 겪었던 고통이 창기가 되

기도 했던 일본인 가라유키상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같다는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자발적 매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284쪽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주목받아온 것은 그들의 고통이 다른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여성들에게 가혹한 생활이었던 것처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을 위해 준비된 여성들 역시 미군을 상대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이후의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 그들 역시 참혹한 생활을 했고, 그런 참혹함과 그에 따른 고통은 '일본군'이나 '미군'이라는 고유명사 이전에 '성노동' 자체가 강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곳에 국가가 만든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43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 ...(중략)... 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윤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43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중략)...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율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의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47쪽 - 다무라 다이지로 소설 「메뚜기」 속 장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의 강간 욕망은 그녀들이 '고작 조선빠'였기 때문에 생긴 욕망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여성 경시뿐만 아니라 민족 경시가 그들에게 강간을 허용한 것이다. '저 여자들하고 한 번 하'는 데에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려야'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한 것은 상대에게 그럴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그렇게, 여성을 도구화 하는 성차별뿐 아니라 조선인임을 경시하는 민족차별이 만든 존재이기도 했다. 그 점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른 점이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91쪽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빚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48쪽 - 다무라 다이지로 소설 「메뚜기」 속 장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다시 말해 소설 속의 장면은 '공적'으로 용인된 구도, 즉 종주국—식민지라는 권력구조가 만든 일이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강간으로 처벌받아야 할 영역조차 넘어선 교묘한 구조 속의 일이지만, 문제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그렇게 군대에 의해서든 민간에 의해서든 '공적'인 운영 공간의 바깥에서도 강간—착취당하기 쉬운 존재였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피고인의 의견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취지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 이었다는 사실을 압

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번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은 가공의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표현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도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4. 범죄일람표 4번 - 이 사건 도서 제38쪽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 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위안부와 가라유키상은 유괴되거나 속아서 팔려오는 등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연행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유키상들이 해외에서 일본군인 등 해외로 진출한 일본남자들을 뒤에서 돌보거나” (이 사건 도서 제31쪽 4~5줄) “바다를 건넌 지사들(일본남자들)은 가라유키상이 일하는 유곽을 근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도 앞장서서 돌보았다” (이 사건 도서 제31쪽 9줄), “야전우편국에서 매일 고향으로 송금” (이 사건 도서 제34쪽 5줄)하는 등 강제연행된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반하는 즉, 외견적으로는 자발성이 있는 정황들을 설명하면서 ‘이중성’이라는 의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정황들이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혹은 가정의 구조적인 강제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가라유키상의 경우 해외로 송출되는 과정이 ‘강제동원당하는 경우’와 ‘스스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록 ‘스스로 가는 경우’ 조차도 국가와 사회 가정의 구조적 강제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이 서술한 가라유키상의 “이중성”은 외견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 혹은 가정의 구조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견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에 대하여 피고인 나름의 해석과 견해를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자발적 매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가라유키상’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괴되거나, 속아 팔려온 여성들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해외로 송출된 여성으로서 그중에는 ‘매춘을 강요당한 이들’도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강제동원되어 해외송출을 강요받은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라유키상의 이중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성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 혹은 가정의 구조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서술한 “가라유키상의 이중성”이 가라유키상의 자발적 매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안부의 자발적 매춘을 암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할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40쪽

물론 그러한 '국민동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총동원'이라는 형태로 전 국민을 전쟁협력자로 만들었던 '일본'의 파시즘과 제국주의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52쪽

군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전쟁터가 아닌 식민지는 아직은 '일상'이 유지된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징병이든 징용이든 구성원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모집 행위조차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⑥ 이 사건 도서 제295쪽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자란 한 사람의 조선인 위안부가 그 두 얼굴을 갖는 것은 '식민지화'된 순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식민지화되었던 우리 자신, 우리의 과거와 화해할 수가 없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⑧ 이 사건 도서 제30쪽

'일본인 위안부' 역시 가부장제와 국가의, '가난한 여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낸 존재였다.

⑨ 이 사건 도서 제31쪽

'위안부'들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⑩ 이 사건 도서 제143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중략)...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율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의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⑪ 이 사건 도서 제147쪽 - 다무라 다이지로 소설 「메뚜기」 속 장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의 강간 욕망은 그녀들이 '고작 조선빠'였기 때문에 생긴 욕망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여성 경시뿐만 아니라 민족 경시가 그들에게 강간을 허용한 것이다. '저 여자들하고 한 번 하'는 데에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려야'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한 것은 상대에게 그럴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그렇게, 여성을 도구화 하는 성차별뿐 아니라 조선인임을 경시하는 민족차별이 만든 존재이기도 했다. 그 점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른 점이다.

⑫ 이 사건 도서 제191쪽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빚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⑬ 이 사건 도서 제148쪽 - 다무라 다이지로 소설 「메뚜기」 속 장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다시 말해 소설 속의 장면은 '공적'으로 용인된 구도, 즉 종주국—식민지라는 권력구조가 만든 일이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강간으로 처벌받아야 할 영역조차 넘어선 교묘한 구조 속의 일이지만, 문제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그렇게 군대에 의해서든 민간에 의해서든 '공적'인 운영 공간의 바깥에서도 강간—착취당하기 쉬운 존재였다는 점에 있다.

피고인은 위안부등이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강요받았다는 점을 위안부의 이중성이라 명시하고 있

으며, 이러한 위안부의 이중성 역시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 (이 사건 도서 제31쪽 19줄)임을 명시하여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취지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 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4번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은 가공의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표현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도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5. 범죄일람표 5번 - 이 사건 도서 제38쪽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 매춘부와 달리 본인들에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동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 하였으며,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없었고 서술함으로써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강제연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금의 혼란은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대와 위안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강제연행의 문제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대는 1938년 일본이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국민 전체를 전

쟁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국민총동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39년부터 ‘국민징용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국민근로동원령’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가며 14~40세의 남자, 14~25세의 미혼여성을 국가가 동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선에서 정신대 제도가 실제로 (법에 의거한) 강제적 동원의 형태로 가동된 것은 1945년 8월인 듯하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944년에는 조선에서도 정신대가 조직되었는데”라고 서술하여 정신대는 일본이 ‘국민동원령’이라는 ‘법’을 만들어 전쟁을 위하여 국민을 강제적으로 연행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에 대하여 이 사건 도서 제153쪽에서 피고인은 “정신대 모집은 ‘법’을 적용시켜 합법화하면서 위안부모집을 그렇게까지 않은 것은 그것이 식민지에서의 ‘온건통치’의 임계선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위안부모집에서 업자와 포주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바로 그래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온건통치’의 범주에 ‘자발적으로’ 편입된 이들이 ‘개인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온건통치를 유지하면서) 식민지인들에게 불법행위를 전담시켜 그들을 동족에 대한 가해자로 만들었다.”, “반체제 사상범을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작동시키는 일로 ‘법’ 망 안에서 가능했지만, 식민지인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것은 ‘온건통치’를 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모집된 정신대와 달리, 위안부의 모집은 온건통치

를 표방하는 일본의 식민정책상 일본군에 의한 물리적 강제행사가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었으며, 위안부모집은 업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등 정신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 서술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안부가 공식적으로 강제연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은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고 있는데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들의 유괴와 강제연행이 있었음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정하여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5번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정신대와 위안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안부의 경우 최소한 조선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즉, 법령의 시행등에 의하여)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적으로 일본군의 유괴 또는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군 및 일본국가는 책임을 져야 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38쪽

물론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끌려간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도서 제42쪽

'위안부'들의 증언은 자신을 데려간 주체가 '마을남자'이거나 모르는 아저씨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나 '군인'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③ 이 사건 도서 제74쪽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였다면 일본 군인들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머나먼 이국땅으로 '강제로 끌려온' 존재였다. 물론 그들에게는 조선인 위안부에 비해 남성이자 일본인이라는 지배적 지위가 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11쪽

일본 국가가 필요로 했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일본 국가의 '강제성'은 존재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52쪽

군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전쟁터가 아닌 식민지는 아직은 '일상'이 유지된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징병이든 징용이든 구성원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모집 행위조차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54쪽

군이 주체가 되는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군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야 한다.

⑦ 이 사건 도서 제25쪽

그런 의미에서는 타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임으로써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점만으로도 일본은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첫 번째 주체이다. 더구나 규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법적인 모집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

집 자체를 중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일본군의 책임은 크다. 목인은 곧 가담하는 일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⑨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 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⑩ 이 사건 도서 제120쪽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위안부’를 필요시하고 위안부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관리’를 했던 건 분명하다. 그런 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남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 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도서에서 ‘물론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끌려 간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적 지 않았다’ 고 서술하는 등,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가 존재하였 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군에 의한 유괴 및 강제 연행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된 경우가 아니라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이처럼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군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모집이 횡행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 자체를 중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일 본군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

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취지가 ‘위안부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5번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은 가공의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표현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도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6. 범죄일람표 6번 - 이 사건 도서 제61쪽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금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6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 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 정신적 ‘위안’ 자로서의 역할 - 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궁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 이라고 한 것은 위안부들에게 성적 위안 뿐 아니라, 군인들에 대한 ‘정신적 위안’ 까지 강요하였던 일본 군부의 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술한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위 부분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이 성적 욕구를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라 부상병 간호, 빨래와 바느질 등 정신적 위안까지 요구되었다고 소개한 다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이러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 내지 평가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고 판시 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당시 조선인에게도 일본에 대한 애국을 강요하고 “황국신민” 이 되기를 요구하였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  
면서, 일본국으로부터 부여되고 강요된 위안부의 역할과 의무를 설명하기  
위함이지 위안부가 실제로 일본국에 자궁적으로 협력하였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적 위안” 의 역할이 위안부들에게 “국가가 멋대로 부  
과한 역할” (이 사건 도서 제61쪽 20줄)이었으며, 위안부들을 전쟁수행에 강  
제동원하면서 “애국” 이라는 명분을 위안부들에게 강요하여 위안부들이  
자신을 합리화할 여지를 제공한 일본제국의 책략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소가 지옥 같은 체험이라는 사실’ (이 사  
건 도서 제76쪽), ‘위안부 생활은 폭행과 병과 죽음이 이웃하는 장소’ (이  
사건 도서 제149쪽),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란 벗어나고 싶은 곳’ (이 사건  
도서 제67쪽)이라고 서술하여 위안부들에게 위안소생활은 벗어나고 싶은 지

욱 같은 곳이었음을 인정하고, 위안부들이 그러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사건 도서 제61쪽 21~22줄)을 내기 위한 방편으로 위안부들의 눈앞에 주어진 ‘거짓애국’ 과 ‘위안’ 에 몰두하는 선택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추측과 견해를 제시한 것입니다.

즉 위안부들이 자신의 처절하고 가혹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사용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일본제국에 의하여 강요된 “(다소무리한) 궁지” 인 것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었을 뿐, ‘위안’ 이라는 이름의 노동이 대부분의 ‘위안부’ 들에게 성과 신체를 혹사당하는 가혹한 노동이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도서 제59쪽 17줄-19줄) 라고 서술함으로써, 이러한 궁지가 위안부들의 가혹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위 구절에서 말하는 “(다소 무리한) 궁지” 는 위안부들이 자신이 처한 처절하고 가혹한 상황에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또는 버티기 위한 자기최면과 같은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현실도피를 위한 자기최면의 방편이 위안부들이 일본국가나 일본군에 자공적으로 협력하였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서에서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자발성과 같아 보이는 의견은 거짓애국이며 현실에서 느끼는 극도의 고통을 극복하

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최면 등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60쪽

그러나 포주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위안부들이(물론 그중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돌아간 이들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혹감과 슬픔과 분노를 지우고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적극성은 포기와 체념, 혹은 그저 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트릭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교를 부리는' 일이 비참성과 배치되는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이 '위안부의 고통'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도서 제31쪽

'위안부'들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⑤ 이 사건 도서 제64쪽

물론 이들 '열 명'이 '1000명'을 상대해야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들의 '위안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79쪽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숫자의 군인을 감당해야 했다는 점에서도 '위안부'가 '군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52쪽

군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전쟁터가 아닌 식민지는 아직은 '일상'이 유지된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징병이든 징용이든 구성원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모집 행위조차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 위안부가 정신적 '위안' 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궁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궁적 협력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은 위안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에 대하여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이라고 서술하여,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또는 자궁적으로 일본국가에 협력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국가가 강제적으로 협력을 강요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범죄일람표 6번의 서술은 피고인이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발적·자궁적으로 협력하였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강요에 의하여 일본국 또는 일본군에 강제적으로 협력하였다는 근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7. 범죄일람표 7번 - 이 사건 도서 제62쪽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7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위 범죄일람표 7번의 서술은 ‘센다가 인터뷰한 어느 업자의 증언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의견이 ‘위안부가 일본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한 것도 아

나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위안부는, 오로지 몸만을 착취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제국 국가로부터 애국과 헌신을 강요당했으며,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 애국심과 헌신을 내면화하는 일을 통해 그 상황을 견뎌내려 하기도 했다는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인은 식민지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일본제국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었기에, 당시 일본국 또는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에게 부과된 의무가 일본인 위안부와 ‘기본적으로 같다’는 의미일 뿐,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7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이 성적 욕구를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라 부상병 간호, 빨래와 바느질 등 정신적 위안까지 요구되었다고 소개한 다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이러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 내지 평가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43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중략)...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윤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의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④ 이 사건 도서 제62쪽

물론 '조선인 일본군'이 그랬듯이, '애국'의 대상이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서의 다른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은 위안부에 관하여 '강제의 존재', '성노예' 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위안부를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로 묘사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일람표 7번의 문장에 바로 이어지는 서술을 보면 “그렇지 않고

서는 패전 전후에 위안부들이 부상병을 간호하기도 하고 빨래와 바느질을 하기도 했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사유리’ (작은 백합), ‘스즈란’ (방울꽃), ‘모모코’ (복사꽃) 같은 일본이름으로 불렸다는 것도, 식민지인이 ‘위안부’가 되는 일이란 ‘대체일본인’이 되는 일이었 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사건 도서 제62쪽)고 피고인은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일본군에 의해 조선인 위안부에게 부과되었던 의무가 일본인 위안부의 대체였으며, 결국 일본군에 의해 조선인 위안부에게 강요되었던 요구에 있어 일본인 위안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는 것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연행된 성노예’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거짓 애국’,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인 위안부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8. 범죄일람표 8번 - 이 사건 도서 제65쪽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위 범죄일람표 8번의 서술은 “전투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다소 온순하고, 이제는 자기는 필요없다고 잔돈 부스러기를 놓아두고 가기도 했다. 전투에 나가면서 무섭다고 우는 군인들도 있었다. 그럴 때 나는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위로해주기도 했다. 정말 살아서 다시 오면 반가워하고 기뻐했다. 이러한 중에 단골로 오는 군인들도 꽤 되었다.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말도 들었다.(『강제 1』, 53쪽)” (이 사건 도서 제65쪽)는 위안부의 증언에 대하여, 당시 일본제국이 위안부들에게 요구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진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기존의 위안소와 다른 생활을 소개한 다음, 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일관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위안” 이라는 역할이 위안부 스스로 선택하여 행한 역할이 아니라 ‘일본제국’ 으로부터 요구된 역할이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범죄일람표 8번의 서술에서도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제국’ 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 의 역할은” 이라고 서술하여, 일본국가가 위안부들에게 강제적으로 협력을 강요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이런 기억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다. 설사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을 허한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란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도서 제67쪽 10~12줄) 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제국 으로부터 강요된 정신적 위안을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와 군인 사이에 인정이 존재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부수적인 기억이고 위안

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안부와 군인 사이에 인정이 존재하였을 수도 있는 사정이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 76쪽

물론 거듭 말하지만, 사랑과 평화와 동지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소'가 지옥 같은 체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명예와 칭송이 따른다 해도 전쟁이 지옥일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지옥을 살아내는 힘이 되었을 연민과 공감, 그리고 분노보다 운명으로 돌리는 자세 역시 기억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도서 제 91쪽

그녀들이 설사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해도, 그녀들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이며 그런 한, 그녀들을 만든 것이 식민지 지배 구조라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48쪽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군 중에는 그녀들을 '인간'으로서 인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위안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사랑하고 청혼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설령 그녀들이 '조선인 부모에 의해 팔려'가거나, '조선인 업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이였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49쪽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위안부 생활은 폭행과 병과 죽음이 이웃하는 장소였다.

⑤ 이 사건 도서 제 150쪽

위안부는 자신의 몸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다.

⑥ 이 사건 도서 제239쪽

물론 조선인 위안부들의 일부가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피해에 대해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⑦ 이 사건 도서 제 258쪽

'조선인 위안부'가 역사 속의 '피해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⑧ 이 사건 도서 제219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본인'이 되어 군인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된 이들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위안'의 시스템적인 가해에 더해 개인적은 폭력과 강간 등의 가해를 더 만났던 경우다. 그리고 그 폭력과 강간과 중절의 주체는 때로는 업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⑨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⑩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안소는 지옥같은 체험이었으며 위안부들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이었으며,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제국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들에게 협력을 강요하였다고 계속

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조선인 위안부가 역사 속의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음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8번의 서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 할 것입니다.

## 9. 범죄일람표 9번 - 이 사건 도서 제67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었다는 점이다.” 그것 놔두면 문제될 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9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동지적 관계”라 표현한 의미는, 당시 조선은 일본제국의 일부가 된 상태에서 조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인”으로 간주되게 된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당시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던 중국이나 네덜란드 등의 위안부와는 정황이 달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었으며, 식민지라는 구조안에서 그 안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던 조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표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9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진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기존의 위안소와 다른 생활을 소개한 다음, 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위 범죄일람표 9번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도서의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이 사건 도서

제55쪽),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이 사건 도서 제219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지적 관계의 의미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로서의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군수품’ 으로서의 동지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위안부의 현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의 동지라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67쪽

물론 이런 기억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다. 설사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을 허한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란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② 이 사건 도서 제76쪽

물론 거듭 말하지만, 사랑과 평화와 동지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소’가 지옥 같은 체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명예와 칭송이 따른다 해도 전쟁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지옥을 살아내는 힘이 되었을 연민과 공감, 그리고 분노보다 운명으로 돌리는 자세 역시 기억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도서 제91쪽

그녀들이 설사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해도, 그녀들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이며 그런 한, 그녀들을 만든 것이 식민지 지배 구조라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48쪽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군 중에는 그녀들을 ‘인간’으로서 인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위안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사랑하고 청혼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설령 그녀들이 ‘조선인 부모에 의해 팔려’가거나, ‘조선인 업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이였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49쪽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위안부 생활은 폭행과 병과 죽음이 이웃하는 장소였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50쪽

위안부는 자신의 몸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57쪽

한 사람의 여성을 압도적인 다수의 남성들이 윤간했다는 사실, 한 사람의 인간을 '인간'이라기 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일본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⑧ 이 사건 도서 제157쪽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었던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던 '위안부'들의 고통자체에 대한 상상은 가능할 것이다.

⑨ 이 사건 도서 제219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본인'이 되어 군인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된 이들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위안'의 시스템적인 가해에 더해 개인적은 폭력과 강간 등의 가해를 더 만났던 경우다. 그리고 그 폭력과 강간과 중절의 주체는 때로는 업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피고인은 “위안소는 지옥같은 곳이며, 위안소에서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이었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으며, 따라서 위안

부가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위안부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아닌 일본군이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 위안부”,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라는 피고인의 의견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취지가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9번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은 가공의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표현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도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10. 범죄일람표 10번 - 이 사건 도서 제99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였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0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서술은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후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위안부가 “우리를 배에 싣고 요코하마로 왔어, 일본사람이 데리고 왔어, 요코하마 와서도 미군을 봤지. 시코쿠 전쟁범인들만 집어넣는 데로 왔어, 한국여자는 나하고 셋이 왔어. 그 외엔 전부 일본사람들이야. 거기 오니까 한국여자들이 붙들려서 많이 와 있대.” (『강제 3』, 313쪽)라는 증언, 즉

위안부들이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진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기존의 위안소와 다른 생활을 소개한 다음, 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다.

① 이 사건 도서 제57쪽

간호원도 배운다고 배웠지. 미국사람이 뭐시가(비행기가) 오는 것 같으면 총도 맞추면 이것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호다이(붕대)를 갖다가 어디 맞으면 어떻게 감으라 카는 거 그거 연신 배와주고 놀 여개가 없어요.(『강제5』, 139쪽)

② 이 사건 도서 제57쪽

거기가 일선이라도 군인들 큰 전쟁 나가서 돌아오면 기모노 입고 에프론 하고 고쿠로 사마데시타(‘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보통 때는 몸빼 입고 안 그러면 스카트 같은 것 입고, 기모노는 겨울거 여름거 봄거. 도시 가서 돈주고 사야지. 인기카이(원문에는 괄호 안에 ‘송별회’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연예회’[여흥을 걸들인 술자리]의 잘못된 일본어발음 일 가능성이 크다-인용자) 같은 거 하거든요.(같은 책, 140쪽)

③ 이 사건 도서 제58쪽

대동아전쟁 나고 거기 있는 여자들이 다 훈련받았지. 아침이면 다 나와서 모두 체조하고, 군대식으로 똑같이 훈련받았지. 신작로 운동장에서 훈련을 달 받은 받았어. 수류탄 던지는 거 그거는 부대서. 부대서 거기서 훈련시키는 사람 있어.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군인이지.(같은 책, 140쪽)

④ 이 사건 도서 제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40쪽

물론 그러한 '국민동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총동원'이라는 형태로 전 국민을 전쟁협력자로 만들었던 '일본'의 파시즘과 제국주의다.

⑥ 이 사건 도서 제62쪽

물론 '조선인 일본군'이 그랬듯이, '애국'의 대상이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잇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 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위안부들이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받아주는 일 뿐만아니라, 간호와 봉대감기 심지어 총쏘기(총조립하기)와 군사훈련까지 받았다는 위안부들의 증언(이 사건 도서 제57쪽, 제58쪽) 등과 기타 정황에 비추어, 위안부들이 일본군의 강요에 의하여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패전

후 위안부들이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 것뿐이며, 위안부들이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여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정황’ 과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사건 도서 제99쪽 10줄)이라고 서술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국의 일원이 되어버린 정황과 그에 따라 협력을 강요당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위안부들의 일본군에 대한 협력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들이 일본국가의 강요에 의하여 일본군에 강제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11. 범죄일람표 11번 - 이 사건 도서 제112쪽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1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

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위 범죄일람표 11번은 위안부가 일본국이나 일본군부에 의하여 성노예로서 이용당한 형태가 매춘이라는 형식이었다는 것과, 당시에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여성으로서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여성들이었음을 근거로 한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 문장의 앞부분에 “무엇보다도, 성노동의 가해자는,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시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아버지나 오빠가 물건처럼 팔 수도 있었던 시대, 여성의 소유권을 남성이 가졌던 시대의 가부장제적 국가였다” (이 사건 도서 제112쪽 12~15줄)고 기술하여, “성노동의 가해자는 가부장제적 국가” 이고, 처음부터 조선인이 목표였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부장제” 사회하에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결과로 조선인 여성들이 동원대상이 되었다라는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이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자발적 매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위 범죄일람표 11번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도서의 내용으로 볼 때 ‘위안부가 본질이 매춘부였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

고인은 위안부의 자발성을 부정하고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설사 자발적인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추업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회적 구조, 즉 가난하거나 식민지의 여성이거나 가부장제 속의 여성이라는 구조적 강제성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12쪽

무엇보다, 성노동의 가해자는,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시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아버지나 오빠가 물건처럼 팔 수도 있었던 시대, 여성의 소유권을 남성이 가졌던 시대의 가부장제적 국가였다.(『화해를 위해서』)

② 이 사건 도서 제143쪽

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윤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든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다.

③ 이 사건 도서 제288쪽

자신을 위한 집도 땅 한 뼘도 없이 몸담을 곳을 찾아 '이동'을 당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다. 빈곤이 고향을 떠나도록 그들의 등을 떠밀었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위안부'가 되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58쪽

하지만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醜業'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 그녀들은 그저 가난하거나 식민지의 여자거나 가부장제 속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립 가능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문화자본)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⑤ 이 사건 도서 제74쪽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였다면 일본 군인들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머나먼 이국땅으로 '강제로 끌려온' 존재였다. 물론 그들에게는 조선인 위안부에 비해 남성이자 일본인이라는 지배적 지위가 있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54쪽

군이 주체가 되는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군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야 한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47쪽-소설「메뚜기」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의 강간 욕망은 그녀들이 '고작 조센삐'였기 때문에 생긴 욕망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여성 경시뿐만 아니라 민족 경시가 그들에게 강간을 허용한 것이다. '저 여자들하고 한 번 하'는 데에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려야'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한 것은 상대에게 그럴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그렇게, 여성을 도구화 하는 성차별뿐 아니라 조선인임을 경시하는 민족차별이 만든 존재이기도 했다. 그 점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른 점이다.

⑨ 이 사건 도서 제191쪽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빚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나아가 그들을 그런 장소로 내몬 가부장제에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시스템을 목인한 국가에 있다. ...(중략)...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력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나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개인이 거의 세상을 떠났거나 찾기 어려워진 이상 '범죄'로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이미 없다고 해야 한다. 대신, 구조적 강제성을 만든 책임 주체로서, 일본 국가가 그런 개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안부들의 불행을 만든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식민지의 빈곤”에 따른 것임을 지적해  
‘조선을 통치한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위안부는 일반적인 매춘이  
아닌 “성노예”였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문장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였음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  
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  
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  
은 구조 속의 일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취지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 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  
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1번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  
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전혀 서  
술하지 않은 가공의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  
되는 표현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도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

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12. 범죄일람표 12번 - 이 사건 도서 제120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2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위안이란 기본적으로 '매춘'과 '강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이라고 서술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강간으로만 이해하는 '지원단체'와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면서 위안

부 문제를 매춘으로만 이해하는 ‘일본의 우익을 비롯한 위안부 문제 부정자들’ 이 서로 과장 혹은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면서 자신들만의 운동을 지속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뿐입니다.

즉, 피고인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위안부들, 특히 생존한 위안부들에게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위안부들이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단체와 위안부문제부정자들이 서로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은채,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운동을 지속하면서 이 문제의 실제 피해자인 위안부들은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원단체 등은 운동의 지속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위안부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시각과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위안은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 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지원단체와 위안부 문제 부정자들의 입장과 대비하여 피고인 자신은 위안을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 으로 본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강간적 매춘’ 과 ‘매춘적 강간’ 이라는 단어는 일본에

서 의도한 위안소의 운영형태는 관리매춘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위안부들의 동원이나 그 운영은 윤간이자 상징적인 “강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 …(중략)… 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윤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이 사건 제143쪽 2~5줄)라고 서술하여 일본군의 의도는 관리매춘이라는 형식의 운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안부에게 강제적이었으며, 위안부는 성노예에 불과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적 매춘’과 ‘매춘적 강간’의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강간이라는 강제성’이 ‘매춘이라는 자발성’보다 더욱 강조되어 있는 용어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강간에 주안점을 둔 용어임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즉, ‘강간적 매춘’과 ‘매춘적 강간’의 의미를 자발적 매춘에 있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 할 것이며, ‘강간적 매춘’과 ‘매춘적 강간’은 ‘자발성’이라는 외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발성이 아닌 ‘구조적 강제’에 의함이고, 일본이 본래 위안소의 설치로부터

의도한 운영형태는 ‘매춘’이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성노예’였으며 결국 ‘위안부’라는 것도 국가에 의해 윤간이 허용된 여성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이라 할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43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중략)...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윤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의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47쪽 - 다무라 다지로 소설 「메뚜기」 속 장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의 강간 욕망은 그녀들이 ‘고작 조선빠’였기 때문에 생긴 욕망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여성 경시뿐만 아니라 민족 경시가 그들에게 강간을 허용한 것이다. ‘저 여자들하고 한 번 하’는 데에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려야’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한 것은 상대에게 그럴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그렇게, 여성을 도구화 하는 성차별뿐 아니라 조선인임을 경시하는 민족차별이 만든 존재이기도 했다. 그 점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른 점이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91쪽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빚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48쪽 - 다무라 다지로 소설 「메뚜기」 속 장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다시 말해 소설 속의 장면은 ‘공적’으로 용인된 구도, 즉 종주국—식민지라는 권력구조가 만든 일이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강간으로 처벌받아야 할 영역조차 넘어선 교묘한 구조 속의 일이지만, 문제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그렇게 군대에 의해서든 민간에 의해서든 ‘공적’인 운영 공간의 바깥에서도 강간—착취당하기 쉬운 존재였다는 점에 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서에서 피고인은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일들은 강간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이라는 단어와 관련 문장의 서술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자발적 매춘을 인정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위 용어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와 피고인이 위 도서에서 위와 같이 서술한 목적 등 위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 절에 비추어보면,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13. 범죄일람표 13번 - 이 사건 도서 제130쪽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군과 동지적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범죄일람표 13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이 사건 도서에서 인용한 『강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e-역사관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위안부의 증언을 서술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명시한 것뿐입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제129쪽 11~15줄에서 “가서 얼마 안돼서 남자들 상대 안 할려구 내가 발악하구 하니…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받았는데 피가 죽죽 나구 목간도 못갔어. 나 살려달라고 그러니깐 나 살려준다면서 그때부터 아편을 놓아주는 기라. 그게 아편인기라. 그 뒤 아편을 맞고 나면

아픈 데도 모르는 기라, 상대를 해도. 그래 가지고 고만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다섯 대씩 아편을 맞았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e-역사관 홈페이지)고 인용하면서, 위안부들의 아편의 사용은 대부분 위안부들의 성노동을 강요하기 위한 ‘주인’ 이나 ‘상인’ 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음을 서술하면서,

이 사건 도서 제130쪽 9~14줄에서 “또 아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중략) 중국인, 조선인 장사들이 몰래 와서 파는데 나도 한번 찢러보니 세상이 내세상이여.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중략) 함께 있던 여자들도 몰래 아편을 많이 했어요. 군인들이 찢러줬어요. 들키면 큰일나지. 군인은 아편을 못찌르게 돼 있었거든. 군인들이 몰래몰래 찢러줬는데, 같이 아편을 찢르고 그걸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자도 찢러주고 자기들도 찢르고, 그렇게 했어요.(『강제3』, 133~134쪽)” 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성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주인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아편을 사용한 것과 달리, 위 『강제3』의 위안부의 증언에 한정해서 판단해보았을 때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도서에서 위 서술은 ‘위안부에 대한 부분’ 이 아니라, 한 위안부의 육성을 사용한 위안부 이야기인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의 창작자

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서 서술된 내용입니다. 즉 위 애니메이션의 증언자는 아편을 놓은 이가 군인이 아니라 ‘주인’ 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에서는 군인이 주사를 놓은 것처럼 그려지는 것을 지적하면서(이 사건 도서 제129쪽 7~9줄), 위 『강제3』의 위안부의 증언을 인용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도서의 전체 문맥상으로도 피고인의 위 서술이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표현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 서술에 바로 뒤에서 피고인은 “이런 식의 각색을 거친 이야기는 위안부의 온전한 삶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뿐이다” (이 사건 도서 제131쪽 2~3줄)라고 지적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서술은 오직 위안부의 실제 증언과는 다른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위안부의 온전한 삶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든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의 창작자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서술한 부분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 할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33쪽

물론 한국이 과거에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는 체험이 기본적으로 피해체험인 것은 분명하다. 그 정치가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체험이 정신적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한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다. 더구나 고문과 성적 노동을 포함한 신체적 강제에 더해 생명까지도 ‘일본’이라는 국가에 맡겨진 상태였으니 식민지 체험이 피해체험인 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48쪽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군 중에는 그녀들을 '인간'으로서 인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위안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사랑하고 청혼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설령 그녀들이 '조선인 부모에 의해 팔려'가거나, '조선인 업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이였다.

③ 이 사건 도서 제219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본인'이 되어 군인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된 이들이였다. 우리 앞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위안'의 시스템적인 가해에 더해 개인적인 폭력과 강간 등의 가해를 더 만났던 경우다. 그리고 그 폭력과 강간과 중절의 주체는 때로는 업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였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였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④ 이 사건 도서 제79쪽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숫자의 군인을 감당해야 했다는 점에서도 '위안부'가 '군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위와 같이 사건 도서의 다른 부분에서 피고인이 명시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 이었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하여, 피고인은 일본군을 위안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안부가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를 인정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 도서에서 위안부의 증언

을 인용하여 서술한 목적 등 위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 위안부”,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14. 범죄일람표 14번 - 이 사건 도서 제137쪽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4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의 위 서술은 피고인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명시하면서 “위안부의 자유를 억압한 주체가 ‘일본’ 이나 ‘일본군’ 만이 아니라, 그녀들을 인신 매매 등의 수단을 통해 모집하고 이동시키고 군에 넘겼으며 ‘위안부’ 들의 노동의 대가인 군표를 가로채는 형태로 관리했던 업자와 포주들이야말로 그녀들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구속한 주체였다” (이 사건 도서 제135쪽), “군인이상으로 오히려 더 빈번하게, 더 가혹하게 위안부의 자유를 구속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업주와 포주들이었다” (이 사건 도서 제136쪽), “하루에도 여러 명, 때로는 수십 명을 상대로 성을 제공해야만 했던 가혹한 상황을 놓고, 이제까지의 일본의 지원운동은 성의 ‘구매자’ 만을 비난해온 셈이다. 다시 말해 여성을 상품화해서 착취했던 성의 판매자, 즉 그녀들의 ‘주인’ 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망각해왔다” (이 사건 도서 제136쪽 15~18 줄)고 명시하는 등 위안부의 참혹한 상황을 만든 책임이 일본군 뿐만아니라 업주와 포주 그리고 위안부를 업주나 포주에게 팔아버린 부모 등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일본’ 군인만을 위안부의 가해자로 특수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피고인은 위안부와 개개의 일본군인에 대하여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양쪽 다, 국민동원이라는 국가시스템 속에서 함께 움직여진 장기말이었다. 그들은 둘 다 성과 생명을, 그것을 담는 신체를 ‘국가를 위해’ 바쳐야 했던 한 마리 ‘개미’ 들이었다. 포악한 군인이었던 온순한 군인이었던, 그들의 운명은 다르지 않았다. 그건 그들이 남녀 간의 불평등, 민족적 불평등이라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서 제79쪽 9줄~13줄)고 서술하여, 개개의 일본군인 역시 제국일본에 의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에 강제동원되어 생명을 바칠 것을 강요받은 피해자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대한 가해자로 일본군인만을 특수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페미니즘 정신에 바탕을 둔 운동이었음에도 ‘일본’ 비판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인 ‘남성과 국가와 제국’의 문제로 다루는 일을 어렵게 하고 말았다. 다른 나라 역시 이 문제에서 무죄일 수 없음에도 그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 셈이다” (이 사건 도서 제137쪽 10~13줄), “위안부들의 증언에는 ‘일본’ 뿐 아니라 자신을 팔아버린 부모나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고 또 패전하자 버리고 달아난 ‘주인’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은데도, 지원자들은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는다. 그 결과, ‘위안부’의 참혹한 상황을 만든 책임은 전부 ‘일본군’에만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버렸다” (이 사건 도서 제136쪽 18~22줄)라고 서술하여 위안부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남성과 국가에 의한 여성차

취의 문제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함이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일본인 지원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식민지 제도와 제국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동지적 관계’라고 한 것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인 ‘위안부’와 전쟁상태에 있었던 적국인 네덜란드나 중국인 ‘여성’이 다른 위치의 있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이를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한 것은 전쟁상태에 있었던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적국의 여성들과는 달리 식민지 여성들은 일본을 위하여 전쟁수행에 동원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군인을 ‘위안’하고 실제 전장에서 ‘간호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쟁에 동원되어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

다.

나아가 일본제국에 의해 위안부들에게 부여된 의무 역시 성적 위안과 더불어 전시에 간호부로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보살피는 역할 등과 같이 일본군의 전쟁수행에 협력하는 일이라 할 것이며, 제국 일본은 그러한 전쟁수행에 위안부들을 강제동원하는 형태로 일본에 대한 애국을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이 서술한 “애국”은 위안부들이 일본제국에 대하여 자궁적으로 애국을 하였다거나 애국적 협력자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제국과 일본군이 위안부들에게 강요한 애국이었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61쪽

국가가 일본인을 비롯한 '제국의 위안부'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앞둔 군인을 '후방의 인간'을 대표하여 '전방'에서 '위안'하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역할. 말하자면 '위안부'에게는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도 요구되고 있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② 이 사건 도서 제62쪽

물론 '조선인 일본군'이 그랬듯이, '애국'의 대상이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38쪽

표면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어도, '조선인 주제에 봉대를 잘 감거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별감정은 깔려 있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19쪽

식민지기에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면서 일본군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집된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가 되는 순간 안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었다.

⑥ 이 사건 도서 제79쪽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적의 여자'와는 다른 관계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선인 위안부라도 그녀들이 놓인 정황은 다양했다. '조선인 위안부'란 식민지의 가난과 성적/민족적 차별의식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숫자의 군인을 감당해야 했다는 점에서도 '위안부'가 '군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48쪽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군 중에는 그녀들을 '인간'으로서 인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위안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사랑하고 청혼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설령 그녀들이 '조선인 부모에 의해 팔려'가거나, '조선인 업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이였다.

⑧ 이 사건 도서 제219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본인'이 되어 군인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된 이들이였다. 우리 앞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위안'의 시스템적인 가해에 더해 개인적은 폭력과 강간 등의 가해를 더 만났던 경우다. 그리고 그 폭력과 강간과 중절의 주체는 때로는 업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⑨ 이 사건 도서 제55쪽

1.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 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표면상의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동지적 관계에서 위안부들에게 부과된 역할은 성적 노동과 더불어 전쟁수행에 협력하는 역할로서 이는 일본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위안부들에게 강요된 ‘애국’의 역할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요된 ‘애국’의 역할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식민지인의 처지를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안부가 군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자였다는 것”,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 이라고 명시하여, 개개의 일본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안부들은 피해자였음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안부가 애국적 협력자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하였다거나 이를 암시하였다고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15. 범죄일람표 15번 - 이 사건 도서 제144쪽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선빠'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5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소설 「메뚜기」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위와 같이 서술한 것은 소설 속의 군인들이 위안부를 '신나게 인심씨' 도 되는 '물건'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써, 군인들이 위안부들을 그저 “빠”(여성 성기를 의미하는 중국속어로서, 창녀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로 부른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위의 서술에 뒤이어 “ ‘닿는 것도 아닌데’ 라든지 ‘제제하게 왜 그러나’ 라는 표현은 이 군인들에게 조선인 위안부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한 사람의 ‘창녀’ 조차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

선인 위안부'란 전용권을 가진 부대가 다른 부대 소속 군인들에게 '신나게 인심썰'도 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매춘부에게는 허용되기도 했던 자신의 신체의 관리권을 그녀들은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그저 '통행세'로 간주되는 사용가치일 뿐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상품조차 아니다."로 서술하여, 위안부들은 일본군인들에게 매춘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으며, 신체의 관리권을 전혀 갖지 못한 성노예에 불과하여 언제든 강간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서술하면서 그러한 취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보다 '조선인' 즉 조선인 위안부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자발적 매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47쪽 - 다무라 다지로 소설「메뚜기」속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의 강간 욕망은 그녀들이 '고작 조선빠'였기 때문에 생긴 욕망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여성 경시뿐만 아니라 민족 경시가 그들에게 강간을 허용한 것이다. '저 여자들하고 한 번 하'는 데에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려야'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한 것은 상대에게 그럴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그렇게, 여성을 도구화 하는 성차별뿐 아니라 조선인임을 경시하는 민족차별이 만든 존재이기도 했다. 그 점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른 점이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49쪽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위안소를 타국 군인에 의한 점령지에서의 강간과 비교하면서 일본은 '러시아 같은 야만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야만'과 대조되는 위안소, 잘 관리되면서 지극히 '문명'적으로 보이는 그곳은 가난이나 그 밖의 이유로 차별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식적으로' 용인 한 장소일 뿐이다. 공창을 합법화하는 발상 자체가 인간에 의한 인간(여성)의 상품화라는 '야만'을 정당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50쪽

위안부는 자신의 몸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서의 다른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에 관하여 “여성을 도구화 하는 성차별뿐 아니라 조선인임을 경시하는 민족 차별이 만든 존재” 라고 표현하는 등, 성차별과 민족차별의 피해자이면서, 자신의 몸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감정을 가진 ‘인간’ 이기를 포기해야 했던 성노예로 묘사하고 있을 뿐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안부는 당시 일본군인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한 사람의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며, 전용권을 가진 부대가 다른 부대 소속 군인들에게 ‘신나게 인심씨’ 도 되는 ‘물건’ 에 지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안부들은 일본군인들에게 매춘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으며, 신체의 관리권을 전혀 갖지 못한 성노예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강간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명시하고 인정하였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안부의 본질을 매춘이라고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16. 범죄일람표 16번 - 이 사건 도서 제158쪽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 옳을 수도 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6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기무라 사이조의 견해를 인용하고 이러한 견해가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러한 기무라 사이조의 견해가 사실이라고 말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하지만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醜業’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이 사건 도서 제158쪽 15~17줄), “위안부의 자발성이란,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와 남성과 가부장제의 차별이 만든 자발성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폭탄이 터지는 최전방에서도 폭력에 시달리며 병사들의 욕구를 받아주어야 했다”고 서술하여, 표면적 ‘자발성’ 속에는 ‘구조적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일본인 지원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식민지 제도와 제국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로...(중략)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 111쪽

일본 국가가 필요로 했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일본 국가의 ‘강제성’은 존재했다.

② 이 사건 도서 제 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158쪽

하지만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醜業'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 그녀들은 그저 가난하거나 식민지의 여자거나 가부장제 속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립 가능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문화자본)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④ 이 사건 도서 제 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⑤ 이 사건 도서 제 143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 ...(중략)... 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율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⑥ 이 사건 도서 제 152쪽

군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전쟁터가 아닌 식민지는 아직은 '일상'이 유지된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징병이든 징용이든 구성원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모집 행위조차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⑦ 이 사건 도서 제 74쪽

무엇보다, "순서를 다투지 않아도 되"는 위안부조차 "몇천 번이고 성교를 해야 하는"(같은 책, 「하얀 눈밭」, 13쪽)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본 이들도 다름 아닌 병사들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율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어둔 것도 병사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자발적 매춘에 대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16번의 서술에 뒤이어서 바로 “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醜業’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 “위안부의 자발성이란,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와 남성과 가부장제의 차별이 만든 자발성일 뿐”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 국가가 필요로 했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일본 국가의 ‘강제성’은 존재했다”는 서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서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위 범죄일람표의 16번의 서술이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은 위안부들이 일본국가의 강제성에 의하여 위안부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 17. 범죄일람표 17번 - 이 사건 도서 제160쪽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화해를 위해서」).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7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제159쪽에서 “위안부들이 병사들에게 단체로 다가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교를 부렸다거나 참으로 밝고 즐거워 보여서 성적 노예에 해당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오노다 히로오)라는 발언을 들면서 그녀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라고 서술하여,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으며 이 일에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임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그 적극성은 포기와 체념, 혹은 그저 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트릭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이 ‘위안부의 고통’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고 서술하여, 위안부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기 위하여 위안부의 미소는 매춘부로서 적극적인 호객행

위를 위한 미소가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제국으로부터 강요받은 애국(위에서 계속 본 바와 같이 ‘거짓 애국’이라 할 것입니다)의 미소였  
다라는 의견의 표명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오히려 위안부들이 매춘부가  
아니라 일본제국으로부터 애국을 강요당하는 성노예였다는 의견을 적극적  
으로 표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17번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일  
본인 지원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의 견해를 비판하면  
서 식민지 제도와 제국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  
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 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61쪽

돈을 위해서건 강요에 의해서건 위험한 장소까지 간 것은 대개는 조선인이었다(물론 일본인도 없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들의 적극성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든 것이 가난이었다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녀들 자신의 적극성이라기보다는 위안부를 이용해 돈을 벌려 했던 포주들의 적극성일 뿐이다. 무엇보다 그 대부분은 군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파견근무’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위안부의 ‘적극성’이란 바로 식민지

인이라는 요소가 만든 적극성이었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161쪽

그리고 그렇게 조선인 위안부들이 더 많이 가혹한 환경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식민지의 여성이라는 계급적이고 민족적인 이중차별의 결과로 일본 여성들보다 가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군인들 이 그녀들에게서 본 적극성이란 그런 상황이 만든 적극성이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 160쪽

그러나 포주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위안부들이(물론 그중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돌아간 이들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혹감과 슬픔과 분노를 지우고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적극성은 포기와 체념, 혹은 그저 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트릭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교를 부리는' 일이 비참성과 배치되는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이 '위안부의 고통'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도서 제 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62쪽

그들은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인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은 일본이었다. 그런 이상, 그녀들의 적극성과 주체성을 말하는 일이 '위안부는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입에 틀림없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중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의 다른 부분에서 명시한 내용을 보면 위안부의 적극성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조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녀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 했던 포주들의 적극성 또는 일본군의 요청에 의한 적극성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위안부들이 식민지인으로서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 의 복잡한 구조하에 있었으며,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위안부들의 처지를 서술하면서, 그러한 위안부들의 적극성 역시 일본에 의하여 강요되었다는 것을 명시함과 더불어 위안부들의 적극성으로 인하여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국처녀의 미소' 라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인정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 도서에서 '애국처녀의 미소' 를 인용하여 서술한 목적 등 위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18. 범죄일람표 18번 - 이 사건 도서 제160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 - 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8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의 문제된 서술은 위안부들의 적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안부들이 식민지인으로서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인 협력을 강요당하는 구조하에서, 위안부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공지는 기무라 사이조가 말하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 는 역할 뿐이었다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8번의 서술에 이어서 “내지는 물론 조선·대만에서 전쟁터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라는 기무라 사이조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것은 일본 국가가 그런 ‘애국’ 을 식민지인들에게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18번의 ‘애국심’ 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일본국가가 식민지들에게 강요하여 내면화시킨 것에 불과한 애국심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 역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식민지 제도와 제국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로, ...(중략)...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 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 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지는 물론 조선·대만에서 전쟁터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는 기무라 사이조의 견해에 대하여 “그것은 일본 국가가 그런 ‘애국’을 식민지인들에게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였을 뿐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서술하며, 그러한 ‘애국’은 일본제국이 식민지인 또는 위안부들에게 강요한 ‘애국’이었음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 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도서 제 119쪽

식민지기에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면서 일본군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집된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가 되는 순간 안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었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138쪽- 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④ 이 사건 도서 제 161쪽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의 ‘애국자’라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물론 그 작업이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억되어야 한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따라서 내면화된 애국심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인정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내면화된 애국심을 인용하여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19. 범죄일람표 19번 - 이 사건 도서 제190쪽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9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제189쪽에서 “그동안 지원단체와 위안부의 ‘해결 운동’ 이 벌어지면서, 또 운동이 대외적으로 성공하면서, 수요시위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어느새 해결 자체보다도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한국의 힘’을 확인하는 싸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운동’을 20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병들고 나이든 위안부들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과연 ‘당사자’의 뜻을 존중한

일이었을까. 그녀들을 노구에 채찍질하며 길거리에 나서는 ‘투사’로 만든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미 한 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올바른’ 민족의 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민족’의 억압이 아니었을까.” 라고 서술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지원단체의 운동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위안부문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19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국내 정대협이 위안부 해결 방법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239쪽

물론 조선인 위안부들의 일부가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피해에 대해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② 이 사건 도서 제258쪽

‘조선인 위안부’가 역사 속의 ‘피해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③ 이 사건 도서 제31쪽

'위안부'들이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 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피고인은 위안부가 '역사속의 피해자'이며 ''위안부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위안부가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단체의 위안부 해결에 대한 판단과 운동방법을 비판하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인정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 사건 도서에서 지원단체의 운동방법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서술한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20. 범죄일람표 20번 - 이 사건 도서 제191쪽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은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 매춘부와 달리 본인들에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0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

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은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위안부들에게 자행된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 등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전형적인 의견의 표명이라 할 것이며, 학계에서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학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전형적인 학문의 영역으로서 어느 한 학설이 논거가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연구에 따라 부실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학문의 영역에서 이에 대한 통렬한 비판 등을 통하여 퇴출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정상적인 학문의 세계라 할 것이며, 이러한 비판과 지지 등의 활동을 거쳐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학문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은 국내 유수의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는 학자의 학설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학설은 학문의 영역에서 비판되고 검증되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하거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의 부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동원이 비강제적이었다거나 강제동원이나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계속하여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또한 반복적으로 구조적 강제성이 존재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일본군과 일본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 서술에 앞서 피고인은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시스템을 목인한 국가에 있다.” (이 사건 도서 제191쪽 5~7줄) 라면서 일본의 책임을 긍정하였고 위 서술에 바로 뒤이어 “그런 개인이 거의 세상을 떠났거나 찾기 어려워진 이상 ‘범죄’로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이미 없다고 해야 한다. 대신, 구조적 강제성을 만든 책임 주체로서, 일본 국가가 그런 개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안부들의 불행을 만든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있다.” 라고 하면서 일본국가 및 일본군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 ① 이 사건 도서 제151쪽  
하지만 위안부를 모집한 중심 주체가 민간인이라 해도, 또 모집하는 데에 사기나 납치 등의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병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부 역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이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려 했다 해도 불법적인 수단 이 자행되는 시스템 자체를 방지했다면 시스템을 유지시킨 책임이 군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 ② 이 사건 도서 제152쪽  
군이 물리적으로 행사한 '강제연행'을 글자 그대로 '강제' '연행'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강제연행'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기든 납치든 업자와 포주들이 '강제'로 데려가는 일이 빈번했던 위안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살인교사와 비슷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한 것이 군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군인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전쟁터가 아닌 식민지는 아직은 '일상'이 유지되는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징병이든 징용이든 구성원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모집 행위조차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 ③ 이 사건 도서 제153쪽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온건통치를 유지하면서) 식민지인들에게 불법행위를 전담시켜 그들을 동족에 대한 가해자로 만들었다.
- ④ 이 사건 도서 제154쪽  
군이 주체가 되는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군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야 한다.
- ⑤ 이 사건 도서 제148쪽  
그렇다고 해도, 설령 그녀들이 '조선인 부모에 의해 팔려'가거나 '조선인 업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이였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라고 하면서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강제연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인 업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거나 ‘조선인 부모에 의해 팔려’가는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들었고 식민지인들에게 불법 행위를 전담시켜 일본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동족을 가해자로 만드는 구조의 공범자로써 마지막 순서로 가담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도서에서 일본군과 일본의 책임을 반복적으로 긍정하고 있으며 문제된 서술 역시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이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의 부정을 암시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일본국가의 책임이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일본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위 서술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도서의 수많은 다른 부분에서 피고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가 또는 일본군의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21. 범죄일람표 21번 - 이 사건 도서 제205쪽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u>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 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했다.</u>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1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도 정대협을 비판한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는 의견표명에 불과 합니다. 피고인은 정대협이 잘못된 인식으로 과장 혹은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국민들의 분노만을 유발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반발만 일으키고 있을 뿐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는 것을 지적 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21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국내 정대협의 위안부 해결 방법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위 범죄일람표 21번의 서술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보살폈는지 여부와 무관한 서

술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도서의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위안부들이 군인들을 자발적, 애국적으로 보살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임무가 일본군에 의하여 위안부들에게 강요되었고, 그러한 강요에 따라 위안부들은 간호를 하고 빨래를 하고 묘지에 향을 피우는 등의 일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진작하였다”는 내용 역시 자발적으로 혹은 애국적으로 일본군의 사기를 진작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들에게 주어지고 강요되었던 역할이 사기를 진작하는 역할이었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에 대한 환영회나 환송회에 강제적으로 참석하여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녀들의 그런 모습”은 고소인이 말하는 애국적 협력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본인으로서의 협력을 요구당했고 그에 따라 신체를 착취당한 성노예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했던 모습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생각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몸에 경험한 존재”(이 사건 도서 제207쪽 2~3줄),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이 사건 도서 제207쪽 8~9줄)라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위안부

들을 ‘협력자’ 라고 비난 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서술인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91쪽

그녀들이 설사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이며 그런 한, 그녀들을 만든 것이 식민지 지배 구조라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도서 제 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④ 이 사건 도서 제 31쪽

‘위안부’들이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 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 60쪽

국가가 일본인을 비롯한 ‘제국의 위안부’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앞둔 군인을 ‘후방의 인간’을 대표하여 ‘전방’에서

'위안'하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역할. 말하자면 '위안부'에게는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도 요구되고 있었다.

⑦ 이 사건 도서 제 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따라서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한 일본국에 의해 동원된 위안부의 역할과 이에 따른 식민지의 모순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22. 범죄일람표 22번 - 이 사건 도서 제206쪽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2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의 위 서술은 해방 후에도 많은 수의 위안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고 서술하여, 위안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협력이 있었음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정대협의 운동방법에 대한 피고인의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 역시 위 서술과 관련하여 “국내 정대협의 위안부 해결 방법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제207쪽에서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

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 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 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고 서술하여,

피고인이 말하는 위안부의 협력이란 오히려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의 결과물이라고 명시하여, 일본국 통치하의 구조에 의하여 성을 제공해주거나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91쪽

그녀들이 설사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해도, 그녀들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이며 그런 한, 그녀들을 만든 것이 식민지 지배 구조라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도서 제 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④ 이 사건 도서 제 31쪽

‘위안부’들이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 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 60쪽

국가가 일본인을 비롯한 '제국의 위안부'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앞둔 군인을 '후방의 인간'을 대표하여 '전방'에서 '위안'하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역할. 말하자면 '위안부'에게는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도 요구되고 있었다.

⑦ 이 사건 도서 제 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따라서 '위안부의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인정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식민지시대에 일본에게 협력하였다는 통상적인 의미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이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

었다고 서술한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의 주장은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23. 범죄일람표 23번 - 이 사건 도서 제206쪽

그런 한, '피해자'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3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이 글은 소녀상에 관한 분석 부분이며, 위안부 문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정대협에 대한 비판부분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위안부가 단순히 “조선인”으로서 성적착취를 당한 존재만으로 인식될 경우 동정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일본국에 협력해야 했다하더라도 위안부들이 일본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경우, 국민들이 그녀들에 대한 동정의 시선을 거둘 뿐만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23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국내 정대협의 위안부 해결 방법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위안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

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암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91쪽

그녀들이 설사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해도, 그녀들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이며 그런 한, 그녀들을 만든 것이 식민지 지배 구조라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④ 이 사건 도서 제31쪽

'위안부'들이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60쪽

국가가 일본인을 비롯한 '제국의 위안부'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앞둔 군인을 '후방의 인간'을 대표하여 '전방'에서 '위안'하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역할. 말하자면 '위안부'에게는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도 요구되고 있었다.

⑦ 이 사건 도서 제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23번 서술을 통해 위안부들이 좋으나 싫으나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인 위안부로서 협력을 강요당했고 그러한 강요의 일환으로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이름을 사용하며 일본군을 성적, 정신적으로 위안하는 일을 하였고 그러한 위안했던 행위가 알려졌을 때 실망하며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지 모를” (이 사건 도서 제206쪽 32줄) 일반국민들에게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없으며, 나아가 “위안부가 되기 전에 그렇게 어린 소녀를 내몬 손 또한 우리 안의 다른 손이었음” (이 사건 도서 제206쪽 33줄~제207쪽 1줄)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안부들이 위안부로 동원되게 된 경위, 해방 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 돌아와서 당했던 손가락질 등을 서술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우

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은 소거시킨 채 한가지의 단순화된 공적 기억만을 강제하고 그녀들을 ‘민족의 딸로’ 서만 살아가도록 그러한 기억만을 갖고 있기를 강요하는 정대협이 운동방법을 비판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안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들에게 강요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사회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24. 범죄일람표 24번 - 이 사건 도서 제 207쪽**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

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4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였다고 한 부분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정대협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22. 다.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안부가 오히려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소녀상이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모두 소거시킨 채 저항하고 투항한 위안부라는 하나의 이미지만을 고수하는 것은 식민지의 위안부로서의 슬픔과 굴욕, 절망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국내 정대협 의 위안부 해결 방법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61쪽

국가가 일본인을 비롯한 '제국의 위안부'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앞둔 군인을 '후방의 인간'을 대표하여 '전방'에서 '위안'하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역할. 말하자면 '위안부'에게는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도 요구되고 있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② 이 사건 도서 제62쪽

물론 '조선인 일본군'이 그랬듯이, '애국'의 대상이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38쪽

표면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어도, '조선인 주제에 봉대를 잘 감거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별감정은 깔려 있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19쪽

식민지기에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면서 일본군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집된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가 되는 순간 안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었다.

⑥ 이 사건 도서 제79쪽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적의 여자'와는 다른 관계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선인 위안부라도 그녀들이 놓인 정황은 다양했다. '조선인 위안부'란 식민지의 가난과 성적/민족적 차별의식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숫자의 군인을 감당해야 했다는 점에서도 '위안부'가 '군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48쪽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군 중에는 그녀들을 '인간'으로서 인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위안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사랑하고 청혼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설령 그녀들이 '조선인 부모에 의해 팔려'가거나, '조선인 업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이였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⑨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

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피고인의 “협력”이라는 표현은 위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에 의하여 동원되어 일본을 위한 일을 하게 된 의미이지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견해는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도서 제207쪽 2~3줄),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 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 다니는 ‘노예’임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이 사건 도서 제207쪽 3~9줄)라고 서술하여, 위안부의 협력을 저항했으나 굴복할 수 밖에 없었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위안부의 처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서술에서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위안부들이 일본국에 애국

적으로 자궁적으로 협력했다면 그러한 협력에 슬픔이 있을 리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안부의 슬픔이라고 명시하는 것 자체로 위안부들이 일본국에 애국적 자궁적으로 협력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말하는 ‘협력’이란 위안부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협력’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구조적 강제에 의하여 일본에 협력하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의미이고 애국적이거나 자궁적인 협력이라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 할 것입니다.

## 25. 범죄일람표 25번 - 이 사건 도서 제208쪽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의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5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의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고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한 것은, 위안부 지원단체인 정대협이 최근 들어 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에 비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대협의 운동방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일제에 의한 피해자이자 강요된 협력자라는 모순된 지위를 갖고 있는 위안부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배척과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홀로코스트와는 사실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위안부와 홀로코스트의 문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정대협의 운동방법을 비판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25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국내 정대협의 위안부 해결 방법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계속하여 위안부는 일본국에 의한 성노예라는 피해자이면서 강요에 의하여 일본국에 협력하는 이중적 구도를 지니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위안부가 갖는 모순성, 혹은 이중적 구도 때문에 “참혹한 존재이기는 했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그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배척과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홀로코스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207면 21줄-23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홀로코스트는 직접적인 억압과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져 협력을 강요당하는 구조가 없지만 위안부의 경우에는 억압과 폭력이 협력을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위안부들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협력이 강제되어 구조적으로 협력하게 되어버린 식민지하의 모순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는 이 사건 도서의 곳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207쪽

위안부가 대표하는 '식민지'체험은 '기념'되고 현창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체험이다. '위안부'가 '유관순'일 수 없는 것은 그 점에 있다. 물론 일제가 만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향유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을 내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② 이 사건 도서 제209쪽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식민지인이었기에, 하나의 기억만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였다.

③ 이 사건 도서 제295쪽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자란 한 사람의 조선인 위안부가 그 두 얼굴을 갖는 것은 '식민지화'된 순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식민지화되었던 우리 자신, 우리의 과거와 화해할 수가 없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 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⑤ 이 사건 도서 제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따라서 위안부는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의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는 피고인의 견해에 대하여 위안부

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의 이중적 구도와 식민지하에서의 모순적 지위에 대하여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26. 범죄일람표 26번 - 이 사건 도서 제215쪽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 매춘부와 달리 본인들에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6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정대협이 힘과 민족권력을 설명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정대협은 한국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이 20년 동안 정대협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는 다른 정보를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이 사건 도서 제213쪽 2~3줄)으며, “그런 위안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대협은 이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정대협 관련 인사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그렇게 정대협의 힘은 어느새 대통령도 이길만큼 강해져있었다”(이 사건 도서 제213쪽 9~13줄)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권력화된 정대협과 “정대협의 생각” 이외의 다른 생각은 용납되지 않는 한국사회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응이 한국의 자존심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피고인은 문제가 된 범죄일람표 제 26번 서술을 통하여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라는 단일의 해결방식은 현실성 없는 해결방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방식만을 고집하고 다른 방식(아시아여성기금을 받는 것)은 정의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현재의 지원단체의 입장을 비판하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지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민사판결에서도 범죄일람표 제26번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지원운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술된 표현이고, 정대협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과 다른 기재 부분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들은 정대협의 입법요구 주장을 적시한 다음 반박의 근거로 강제연행의 주체와 국가범죄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피고 박유하가 주관적으로 일본국의 국가책임을 부정한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객관적으로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애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의견표현이 원고들에 대하여 모욕적이라거나 인신 공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 동원이 비강제적이었다거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의 부존재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일제의 위안부 동원에 있어 강제연행 또는 강제동원이 존재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위안부 동원에 있어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징집의 형태의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38쪽

물론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끌려간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도서 제42쪽

‘위안부’들의 증언은 자신을 데려간 주체가 ‘마을남자’이거나 모르는 아저씨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나 ‘군인’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③ 이 사건 도서 제74쪽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였다면 일본 군인들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머나먼 이국땅으로 ‘강제로 끌려온’ 존재였다. 물론 그들에게는 조선인 위안부에 비해 남성이자 일본인이라는 지배적 지위가 있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11쪽

일본 국가가 필요로 했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일본 국가의 ‘강제성’은 존재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52쪽

군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전쟁터가 아닌 식민지는 아직은 ‘일상’이 유지된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

서는 '법'이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징병이든 징용이든 구성원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모집 행위조차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54쪽

군이 주체가 되는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군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야 한다.

⑦ 이 사건 도서 제25쪽

그런 의미에서는 타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임으로써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점만으로도 일본은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첫 번째 주체이다. 더구나 규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법적인 모집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 자체를 중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일본군의 책임은 크다. 목인은 곧 가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⑧ 이 사건 도서 제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서술을 통해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이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의 부존재를 암시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의 구조적 강제성을 밝히며 식민지하에서 강제성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27. 범죄일람표 27번 - 이 사건 도서 제246쪽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7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정대협이 위안부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온 보고서였다. 쿠마라스와미는 정신대가 위안부가 되었다면서 강제연행을 했다고 말한 요시다 세이지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 또 위안부의 대부분은 ‘14~18세’였고, 윤정옥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위안부 모집에 학교 제도를 이용했다고 말한다. 또 위안부들이 상대한 군인의 숫자는 하루에 60~70명이라고 적는다.”, “그에 더해 ‘20만의 조선 여성 대부분을 죽였다’면서, 1965년의 한일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은 경제협약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 조약은 이 문제와 상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쿠마라스와미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은 이렇

게 정대협 의 인식 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사건 도서 제254쪽)고 서술하여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그런 쿠마라스와미조차 ‘위안부’의 상황을 ‘강요된 매춘’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안부들을 세 가지-자발적인 매춘업, 음식점이나 세탁부로 갔다가 ‘위안’을 하게 된 경우, 강제연행-로 분류하는 등 ‘위안부’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서술한 후 범죄일람표 27번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27번은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위안부 분류에 대하여 서술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위안부가 처했던 상황이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는 피고인의 견해를 뒷받침 하고자 1996년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위안부에 관하여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보고서는 ‘매춘’의 틀 안에서 자행된 국가에 의하여 허용된 강간 혹은 윤간 이라는 피고인의 견해와 의견을 같이하여 “강요된 매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의견의 표명일 뿐입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자발적 매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범죄 일람표 27번의 기재내용에서 위안부의 본질이 자발적 매춘이라고 암시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기획한 ‘위안소’의 운영 방법이 관리매춘이었으나 위안부들에게는 강간 혹은 율간이었다고 설명한 부분은 위 12. 다.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위 범죄 일람표 27번의 기재내용 바로 앞에 “쿠마라스와 미조차 ‘위안부’의 상황을 ‘강요된 매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서술하여, 위안부의 경우 자발적인 매춘이 아니라 ‘강요된 매춘’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바로 이어지는 위 범죄 일람표 27번의 기재내용에서의 ‘매춘’ 역시 이러한 ‘강요된 매춘’을 지칭하는 것이며 “매춘의 틀” 역시 ‘매춘이 강요되는 시스템’을 표현한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② 이 사건 도서 제 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145쪽

‘조선인 위안부’란 전용권을 가진 부대가 다른 부대 소속 군인들에게 ‘신나게 인심씨’도 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매춘부에게는 허용되기도 했던 자신의 신체의 관리권을 그녀들은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그저 ‘통행세’로 간주되는 사용 가치일 뿐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상품조차 아니다. ...(중략)... ‘위안부’들은 이렇게 ‘무상’

노동도 강요당했다. 특히 처음 위안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들이 장교들에게 통과의례처럼 당하는 강간은 거의가 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보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설령 보수를 받았더라도 그 보수는 그녀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위안부는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자발적 매춘을 인정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본국이 의도한 위안소의 운영 형태가 관리매춘이었고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위안부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28. 범죄일람표 28 - 이 사건 도서 제265쪽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과 동지적 관계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8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일본이 1990년대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치하여 각국의 위안부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서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위안부가 존재했던 일본, 대만,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6개국의 위안부들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네덜란드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과 조선인 여성은 일본군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다르다. 일본군에게 네덜란드 여성은 ‘적의 여자’였지만, 인도네시아의 여성은 점령지의 여성이었고,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 동지적 관계였다”고 서술하여 기금이 각국의 위안부들을 구별하여 운용되었어야 했다는 피고인의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28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

다.

즉, 피고인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 과 관련하여 경우가 다른 여성들을 무조건 같은 위안부로 간주하고 보상한 일이 오랫동안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측면에서 그 국적이 일본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동지적 관계” 의 의미와 그 서술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 피고인의 견해는 14. 다. 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조치에 나서야 할 세가지 이유 중 미완의 1990년대 사죄와 보상을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서 ‘일본 제국’ 의 시각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를 분석 평가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위안부가 일본국과 고소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동지적 관계” 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위 14. 다. 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 서술에서 역시 피고인은 동지적 관계가 자발적 협조적 동지적 관

계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전시에 ‘점령지/전쟁터’와 ‘본토/식민지’를 구별하여 각 나라에서의 위안부들의 위치가 달랐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38쪽

표면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어도, ‘조선인 주제에 봉대를 잘 감기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별감정은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감추어진 차별감정을 보기 위해서도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의 다면성은 오히려 직시되어야 했다. 명확하게 보는 일만이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주체와 피해자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지’적 관계를 기억하고 그 기억만을 고집했던 이들을 무조건 규탄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응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했다. 위안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차별의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동지적 관계’는 우선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② 이 사건 도서 제207쪽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중략)...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도서 제55쪽

목차) 1.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 지옥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④ 이 사건 도서 제31쪽

‘위안부’들이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38~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

중'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219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본인'이 되어 군인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된 이들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위안'의 시스템적인 가해에 더해 개인적은 폭력과 강간 등의 가해를 더 만났던 경우다. 그리고 그 폭력과 강간과 중절의 주체는 때로는 업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즉 피고인이 “동지적 관계” 라는 개념은 그저 “적” 이 된 나라와 구별하기 위하여 서술한 것이라 할 것이며, 당시 위안부는 식민지가 된 결과로 ‘일본인’ 혹은 전쟁에 동원된 ‘군수품’ 으로서 그 공간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말하는 ‘일본인’ 은 어디까지나 국적으로서의 일본인임을 말하는 것일 뿐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9. 범죄일람표 29 - 이 사건 도서 제265쪽**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협력자로서 동지적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29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1990년대 일본의 보상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보상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조선인 위안부와 대만인 위안부는 네덜란드 여성 등 적국의 여성의 경우와 다르게 식민지인으로서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구조적으로 피해자이면서 협력자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위안부들과 일본 간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무엇보다 이 두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관계성에 있다”, “처음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그 주인공이 조선인 위안부였으므로 그들이 식민지배 피해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원단체들이 다른 국가와도 연대하게 되면서 위안부들은 똑같은 ‘전쟁’ 피해자로만 규정되게 된다.” (이 사건 도서 제265쪽) 고 서술하여 조선인 위안부 역시 전쟁피해자로서의 법적 배상을 원하였으

나,

“1990년 일본의 의식과 대응은 1965년 협정 당시와 다르지 않았다. 말하자면 ‘패전’의 책임만을 졌을 뿐 식민지배의 책임은 의식에 없었다”고 서술하여, 일본은 패전의 책임만을 질 뿐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며, 이러한 일본의 인식과 지원단체들의 인식의 괴리가 1990년대 일본의 ‘기금’이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였다고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위 범죄일람표 29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조치에 나서야 할 세 가지 이유 중 미완의 1990년대 사죄와 보상을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서 ‘일본 제국’의 시각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분석 평가한 것으로서 피고 박유하의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29번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한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가 식민지하에서 구조적 강제에 의하여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 이면서도 동시에 일본국으로부터 협력을 강요당하여 협력의 형태로 피해를 입은 아군 혹은

은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의 측면을 띄고 있다는 피고인의 견해와 관련 하여서는 8. 다. 와 14. 다. 등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견해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서의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38쪽

표면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어도, ‘조선인 주제에 봉대를 잘 감거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별감정은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감추어진 차별감정을 보기 위해서도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의 다면성은 오히려 직시되어야 했다. 명확하게 보는 일만이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주체와 피해자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지’적 관계를 기억하고 그 기억만을 고집했던 이들을 무조건 규탄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응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했다. 위안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차별의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동지적 관계’는 우선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② 이 사건 도서 제207쪽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중략)...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도서 제55쪽

목차) 1.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 지옥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④ 이 사건 도서 제31쪽

‘위안부’들이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38~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

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⑦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⑧⑥ 이 사건 도서 제219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본인'이 되어 군인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된 이들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위안'의 시스템적인 가해에 더해 개인적인 폭력과 강간 등의 가해를 더 만났던 경우다. 그리고 그 폭력과 강간과 중절의 주체는 때로는 업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따라서 위안부는 구조적으로 함께 국가 협력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라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에게 강요된 역할과 위안부의 구조적 모순을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 위안부”,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30. 범죄일람표 30 - 이 사건 도서 제291쪽

<p>‘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p>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30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야마시타 영애라는 학자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의 위 서술은 야마시타 영애라는 학자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피고인은 일본이 세력을 확대한 각지에 공창제도가 이식되었고 조선인 위안부는 이러한 공창제도에 편입되고 태평양 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이 되면서 생긴 존재라는 일본의 야마시타 영애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30번의 기재내용에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기재내용이 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것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암시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이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까닭은 이 학자들 역시 ‘위안부’라는 아이디어가 공창제도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위안소의 운영 형태 역시 공창의 운영 형태와 흡사했다는 피고인의 견해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위안소의 운영형태가 공창의 형태였다고 해서 바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이 암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매춘적 강간” 혹은 “강간적 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록 그 외적 형태나 운영의 모습은 매춘의 모습

이었지만 위안부 개개인에게는 강간이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 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② 이 사건 도서 제 143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중략)...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윤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의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147쪽- 다무라 다이지로 소설「메뚜기」속 장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의 강간 욕망은 그녀들이 '고작 조센삐'였기 때문에 생긴 욕망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여성 경시뿐만 아니라 민족 경시가 그들에게 강간을 허용한 것이다. '저 여자들하고 한 번 하'는 데에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려야'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한 것은 상대에게 그럴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그렇게, 여성을 도구화 하는 성차별뿐 아니라 조선인임을 경시하는 민족차별이 만든 존재이기도 했다. 그 점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른 점이다.

④ 이 사건 도서 제 149쪽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위안소를 타국 군인에 의한 점령지에서의 강간과 비교하면서 일본은 '러시아 같은 야만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야만'과 대조되는 위안 소, 잘 관리되면서 지극히 '문명'적으로 보이는 그곳은 가난이나 그 밖의 이유로 차별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식적으로' 용인 한 장소일 뿐이다. 공창을 합법화하는 발상 자체가 인간에 의한 인간(여성)의 상품화라는 '야만'을 정당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취지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 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0번의 의견을 통하여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전혀 서술하지 않은 가공의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표현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이 사건 도서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자의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31. 범죄일람표 31 - 이 사건 도서 제294쪽**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군과 동지적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범죄일람표 31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범죄일람표 제31번 서술은 피고인이 조선인 위안부가 최전선 전쟁터까지 간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제293쪽에서 “전쟁터가 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지역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현지여자’가 전쟁터까지 따라갈 리는 없었을 터이니 전쟁터에까지 간 것은 ‘일본인’이나 ‘조선인’, 그리고 ‘대만인’에 한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서술하여, 일본이 최전선까지 모집하여 배치할 수 있는 여성은 일본인이나 식민지국가의 여성들로서 일본제국의 구성원들이었으며, 일본통치하의 구조속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최전선 전쟁터까지 끌려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31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은

피고 박유하의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31번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한 것 역시 아닙니다. 피고인이 “동지적 관계” 로부터 의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위에서 거듭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인으로서 저항하였으나 굴복하여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인의 처지에서 일본국의 강요에 의하여 강요된 협력행위로 인하여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서술 의도는 이 사건 도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 31쪽

'낭자군'이란 娘子軍, 사회 최하계층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던 여성들을 '군인'에 빗대어 부른 말이다. 국가의 욕망 실현을 위해 동원되었던 이들이 어느샌가 국가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국가를 위한' 역할을 하는 이들로 인정받게 되면서(물론 동원을 위한 국가의 수사일 뿐이다) 생긴 말이었다. 훗날의 위안부들 역시 '낭자군'이라고 불리었고, 위안부들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② 이 사건 도서 제 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117쪽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④ 이 사건 도서 제 140쪽

물론 그러한 '국민동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총동원'이라는 형태로 전 국민을 전쟁협력자로 만들었던 '일본'의 파시즘과 제국주의다.

⑤ 이 사건 도서 제219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본인'이 되어 군인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된 이들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위안'의 시스템적인 가해에 더해 개인적인 폭력과 강간 등의 가해를 더 만났던 경우다. 그리고 그 폭력과 강간과 중절의 주체는 때로는 업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⑥ 이 사건 도서 제55쪽

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또한 위안부들이 당시 실제적으로 낭자군이라고 불리었고,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강요받았지만, 피고인은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안부들이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하여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음을 표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 위안부”,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32. 범죄일람표 32 - 이 사건 도서 제294쪽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군과 동지적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32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위 범죄일람표 32번의 기재내용은 위안부의 증언집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안부가 남자군으로 불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피고인의 견해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위안부들이 ‘남자군’ 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역할을 했다고 서술한 의도는 그녀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순간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식민지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피고인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32번의 기재내용에 이어서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순간부터 견어낼 수 없게 된 모순이었다.” 라고 서술함으로써 그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위 서술 부분에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들은 피고 박유하의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모리사키 가즈에라는 학자가 1976년 저술한 『가라유키상』이라는 저서에서 “그들은 가라유키상을 낭자군이라고 불렀다.(226쪽)” 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낭자군으로 불리기 시작한 최초의 대상이 가라유키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 ‘낭자군’ 이란 娘子軍, 사회 최하계층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던 여성들을 ‘군인’ 에 빗대어 부른 말이다. 국가의 욕망 실현을 위해 동원되었던 이들이 어느샌가 국가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국가를 위한’ 역할을 하는 이들로 인정받게 되면서(물론 동원을 위한 국가의 수사일 뿐이다) 생긴 말이었다.” 고 서술하고 있으며,

“훗날의 위안부들 역시 ‘낭자군’ 이라고 불리었고(『마이니치 클럽』 별책 『일본의 전력』의 위안부 사진 설명문과 사진, <사진 2> 참조), ‘위안부’

들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가’의 역할의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이라고 서술하여 위안부들이 남자군으로 불리운 것이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에 의하여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 이면서도 국가에 의해 ‘애국가’의 역할을 강요당해야 했던 식민지인으로서 위안부의 모순된 처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라 할 것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38쪽

표면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어도, ‘조선인 주제에 봉대를 잘 감거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별감정은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감추어진 차별감정을 보기 위해서도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의 다면성은 오히려 직시되어야 했다. 명확하게 보는 일만이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주체와 피해자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지’적 관계를 기억하고 그 기억만을 고집했던 이들을 무조건 규탄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응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했다. 위안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차별의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동지적 관계’는 우선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② 이 사건 도서 제207쪽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중략)...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도서 제55쪽

목차) 1.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 지옥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④ 이 사건 도서 제31쪽

‘위안부’들이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138~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도서 제219쪽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본인'이 되어 군인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된 이들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위안'의 시스템적인 가해에 더해 개인적은 폭력과 강간 등의 가해를 더 만났던 경우다. 그리고 그 폭력과 강간과 중절의 주체는 때로는 업자이기도 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⑦ 이 사건 도서 제55쪽

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이처럼 이 사건 도서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도 위안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역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의견 역시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에 의하여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 이면서도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강요당해야 했던 식민지인으로서 위안부의 모순된 처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서술에서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

을 하였다는 것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녀들을 아군으로 동원하여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역할에 동원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안부가 군대의 보조적 역할을 했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식민지하에서의 위안부들이 처했던 이중적인 상황과 구조적 모순을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군수품으로서 위안부”,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 “그녀들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구조를 기획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담한 이들은 일본군”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33. 범죄일람표 33 - 이 사건 도서 제294쪽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33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피고인이 나름대로 평가한 결과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위 32.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민지하에서 위안부가 처했던 이중적인 상황과 구조적 모순이라는 피고인의 나름의 해석과 설명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33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은 피고 박유하의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33번의 기재내용을 통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암시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이면서도 일본국에 의하여 협력할 것을 강요당한 식민지인으로서의 이중적 구도를 가진 존재라는 견해는 위 14.다. 와 29. 다. 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33쪽

물론 한국이 과거에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는 체험이 기본적으로 피해체험인 것은 분명하다. 그 정치가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체험이 정신적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한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다. 더구나 고문과 성적 노동을 포함한 신체적 강제에 더해 생명까지도 ‘일본’이라는 국가에 맡겨진 상태였으니 식민지 체험이 피해체험인 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③ 이 사건 도서 제270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만 본다면 식민지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다.

④ 이 사건 도서 제294쪽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순간부터 걷어낼 수 없게 된 모순이었다.

⑤ 이 사건 도서 제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⑥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 임에 틀림없다.

결국 이 사건 도서의 다른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은 "한국의 과거 식민지 체험은 피해체험이며, 위안부들은 고문과 성적 노동을 포함한 신체적 강제에 더해 생명까지도 '일본'에 맡겨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을 뿐,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제33번의 서술에 바로 이어서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건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순간부터 걷어낼 수 없게 된 모순이었다."고 서술하여, 조선인 위안부'는 성적 노예라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일본국에 의하여 협력할 것을 강요당한 식민지인으로서 또다른 형태의 피해자였음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위안부의 이중적 구조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이러한

이중적 구조를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34. 범죄일람표 34 - 이 사건 도서 제296쪽**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자발적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34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라고 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구절은 현재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쟁의 해결을 위하여 양 극단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인용된 부분으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있는 이들이 말하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라는 표현을 직접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현재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 극단의 입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34번의 서술에 앞서 “식민지화는 필연적으로 지배하에 놓인 이들의 분열을 불러온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은 종주국에 대한 협력과 순종의 기억은 우리 자신의 얼굴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고 서술하여, 해방 후 우리는 자발적 또는 강제적이었던 일본제국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려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이유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강제적으로 끌려간 소녀” 라는 구도안에 한정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비록 구조적 강제성에 의한 것이지만 외견적으로 자발성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은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조적 강제성에 의한 것인 이상 이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말하는 자발성은 어디까지나 구조적 강제성에 의한 외견적인 자발성에 불과하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외견적인 자발성이 있는 위안부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피해자이며 희생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 이 직접 ‘강제로 끌어간’ 존재이고 그들을 ‘감금’ 한 것도 일본군이고 모든 군인은 포악하고 모든 위안부는 ‘순진한 어린 소녀’ 로만 간주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이른바 ‘매춘부’ 를 포함)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은 피해자로서의 욕망이 시키는 일이지

만, 표면적인 모습이 ‘완벽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들 역시 피해자이고 희생자였다.” (이 사건 도서 제295쪽 7~13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 152쪽

군인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전쟁터가 아닌 식민지는 아직은 ‘일상’이 유지된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징병이든 징용이든 구성원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모집 행위조차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② 이 사건 도서 제 26쪽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묻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식민지주의와 국가와 가부장제의 강제성뿐 아니라, 그런 구조의 실천과 유지에 가담한 이들의 강제성을 함께 물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도서 제 284쪽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주목받아온 것은 그들의 고통이 다른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여성들에게 가혹한 생활이었던 것처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을 위해 준비된 여성들 역시 미군을 상대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이후의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 그들 역시 참혹한 생활을 했고, 그런 참혹함과 그에 따른 고통은 ‘일본군’이나 ‘미군’이라는 고유명사 이전에 ‘성노동’ 자체가 강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곳에 국가가 만든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하여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구조적 강제성에 대하여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성노예”, “구조적 강제”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35. 범죄일람표 35 - 이 사건 도서 제306쪽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일본국에 협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범죄일람표 35번과 같이 기재함으로써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이었음

을 표현’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으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서 “지금 필요한 일은, 그들을 ‘올바른 조선인 투사’ 로 존재하게 하면서 ‘국가의 품격’ 을 높이는 일 이 아니다. 그저 그들을 ‘한 사람의 개인’ 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 이다.” 라고 서술하여, 위안부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위안부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지원 단체의 운동이 이대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위안부를 또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 일 수 있기에 지원단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35번의 서술을 한 것으로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도, 범죄일람표 35번 기재내용에 관하여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은 피고 박유하의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국의 애국적 협력자임을 암시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먼저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네덜란드는 일본의 적국이었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제국의 구성원의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중국이나 네덜란드의 적국의 여성과 일본과 그 식민지의 여성들은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서술합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견해에 대한 내용은 14. 다. 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적국의 여성과 식민지의 여성이 다른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나 네덜란드의 여성은 오로지 강간의 대상으로서의 피해를 받았고 식민지였던 조선인의 경우에는 성노예의 형태로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에서 구조적 강제에 의하여 일본국에 성노동과 정신노동에 동원되는 이중적 구조의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적국의 여성이 받은 피해와 위안부들이 받은 피해는 그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며 위안부들이 일본국에 협력하는 형태로 동원되는 피해를 입은 측면의 기억을 소거하고 소녀상을 통해 그녀들을 하나의 공적 기억만을 가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이 그들을 다시 한 번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를 통틀어 위안부가 일본국에 고소인이 관념하는 단순한 의미의 협력자였음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이중적 구조로서의 모순과 그러한 모순적 측면을 소거한 채 하나의 공적기억만으로 위안부들을 설명하는 현재 지원단체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을 뿐입니다.

① 이 사건 도서 제117쪽

그들이 총체적인 '피해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측면에만 주목하고 '피해자'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억을 은폐하는 것은 위안부의 전(全)인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위안부들이 자신의 기억의 주인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의 기억에 의해서만 존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주체가 되고 마는 것이다.

② 이 사건 도서 제123쪽

물론 '끔찍한 피해'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위안부의 여러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단 하나의 위안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③ 이 사건 도서 제126쪽

『그 여자네 집』, <남벌>, <각시탈> 이런 유의 소설이나 드라마, 그리고 만화들도 오로지 '하나의 위안부'상을 재생산 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④ 이 사건 도서 제188쪽

그런 상황은 이 할머니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언론이, 지원단체가 보호하는 위안부 이외의 위안부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금'의 보상금을 받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인 '위안부'가 61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도 일본의 지방신문이었다. ...(중략)... 그러나 지원단체가 말하는 '당사자'들이란 어디까지나 지원단체의 생각에 따르는 이들에 한정될 뿐이다. 말하자면 '당사자'는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지원단체와 의견을 달리하는 위안부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도서 제209쪽

그런 한 그 비는 '위안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을 표현한 것일 뿐 위안부 자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⑥ 이 사건 도서 제213쪽

그러나 이런 사태는 정대협 자체의 힘이가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 대부분이 정대협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힘이다. 다시 말해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이 20년 동안 정대협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는 다른 정보를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하다.

⑦ 이 사건 도서 제270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만 본다면 식민지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가 '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상징'으로만 인식된 것은 '위안부'들 사이의 그런 '차이'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⑧ 이 사건 도서 제62쪽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⑨ 이 사건 도서 제116쪽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⑩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결국 이 사건 도서의 다른 내용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안부에 관하여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자적 모습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 조선 국민으로서의 모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그들을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의 이중적 구조와 모순을 설명하며 서술한 목적 등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거짓 애국”, “성노예”, “식민지인의 이중성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는바, 검찰의 주장은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    |
|------------------------------|----|
|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726 판결문 | 1통 |
| 1. 제국의 위안부 도서                | 3부 |

2016. 8.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배진혁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다) 귀중